

“행정부담 경감 및 노동시장 통계에 관한 세미나”  
참가 결과 보고서

2010. 12

○ 주 관 : Eurostat

- 발표 및 토론 : 한국, 멕시코, Eurostat 담당 등

○ 기 간 : '10.11.13~11.18(4박6일)

- 출장지 : 룩셈부르크

○ 참석자

- 고용통계과 : 고용통계과장, 정동욱사무관

- 행정자료팀 : 서재호사무관, 김철주사무관

- 경제통계기획과 : 박순옥주무관

---

---

# 공무국외 출장결과 보고

-행정부담 경감 및 노동시장 통계에 관한 세미나-

---

---

2010. 12. 17.

## I. 개요

### ○ 주 관 : Eurostat

- 발표 및 토론 : 한국, 멕시코, Eurostat 담당 등

### ○ 기 간 : '10.11.13~11.18(4박6일)

- 출장지 : 룩셈부르크

### ○ 참석자

- 고용통계과장 외 4명

\* 멕시코(사업체담당국장 외 5명) Eurostat(대외협력국장 외 12명)

### ○ 회의주제

- 행정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1일차)

- 행정자료 활용방법, 표준화
- 품질진단 및 행정부담 경감 등

- 노동시장 통계에 관한 사항(2일차)

-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개요 및 web 기반 자료수집 방법
- 노동비용, 노사관계 관련 통계작성 방법 등

\* 한국, 멕시코 사례 발표

### ○ 수행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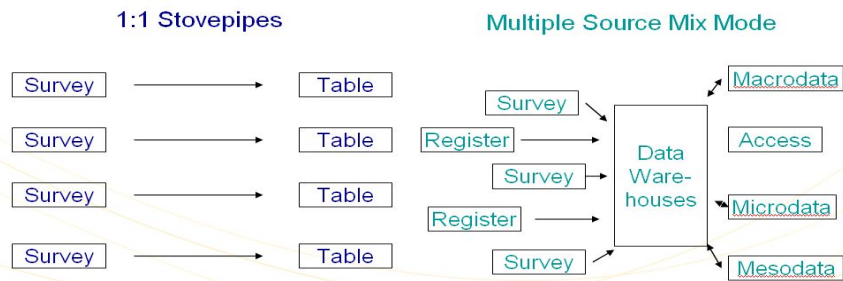
- 우리나라 행정자료 활용, 고용통계 작성현황 발표
- 고용보조지표 및 응답부담 측정 등에 관한 자료수집
- Eurostat, Mexico 사례발표에 대한 토론 등

## II. 회의내용 (요약)

### (Day1)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

#### ○ Eurostat Vision

- 응답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저비용, 고효율 조사로 정도높은 다양한 지표 생산 요구 증대
- Eurostat는 표준화, 분산형 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등 효율화 방안 모색중



#### ○ Evaluation at Eurostat (Rolling Reviews)

- Eurostat는 작성통계의 정도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통계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한 후, 보완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 우리나라의 품질진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checklist를 통해 진단 후 feedback

#### ○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 in Eurostat

- '07년 동 프로그램 착수, 13개 분야에 대한 행정부담 우선 경감 추진
- 행정부담 정도를 계량화하기 위해 측정모형(Standard Cost Model) 이용, 동 결과로 행정부담이 높은 분야에 대한 경감 모색
- \* 동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응답부담 측정 등 추가검토 필요

### (Day2) Labour Market Statistics

#### ○ 노동력 통계(Eurostat)

- LFS, 실업자통계, 빈일자리통계, 노동비용조사 등 9종 작성
- 노동시장참가, 일-생활양립, 교육훈련, 노동비용 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작성 목적

- 통계조사별 다양한 자료원으로 인한 일치성 확보를 위한 조정방안 모색중

\* European Statistical System : 27개 회원국간 협력과 작성 통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각종 합의 추진

### ○ EU LFS(Eurostat)

- EU LFS는 단일 통계가 아닌 33개 국가별 통계에 기반
- 국가별 상이한 기준과 목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EU 정책목표 모니터링을 위한 harmonize 필요성 대두
- Eurostat는 항목, 주기, 대상기간, 조사대상 등에 대한 조정 추진중
- \* 추진근거 : Framework regulation, Implementing regulations

### ○ 한국, 멕시코 사례발표

- 조사개요, 주요지표 및 서비스, 추가 개발지표 등
- \* 고용보조지표 관련 추가 토의(Eurostat TF 결과 등)

### ○ 노사분규통계(Eurostat)

- 자료원 : Trade Union, Social Security Officers, Employers Confederations, Employment Offices
- 노사분규·직장폐쇄에 대한 건수 및 일수, 근로자수 등 작성(1년주기)
- ILO와 Eurostat는 MoU를 체결하고 동 자료에 대한 joint data collection 진행중

(장점) 응답부담 경감, ILO와 기준 일치 및 이용자의 접근용이 등

(단점) 분류개정에 따른 유연성 저하 등

## [향후 과제 및 시사점]

---

### 고용보조지표

- Eurostat는 실업률 이외의 EU 차원의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09.2월부터 '10년까지 TF를 구성하여 4차례에 걸쳐 개념과 포괄 범위 등에 대한 논의 진행
  - EU 국가도 포괄범위와 공표여부 등은 민감한 사안으로 TF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음
- 추가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TF 추진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 예정
  - Full-time vs Part-time underemployed 개념
  - 비경인구중 “일을 원하는 사람중 현재 즉시 취업이 곤란한 사람”과 “즉시 취업은 가능하나 현재 일을 찾지 않는 사람”의 포함 여부
  - Unused labour supply의 처리 문제
  - 고용보조지표의 명칭
  - 고용보조지표를 산출시 분모 처리 문제
    - 미국, 캐나다 등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정한 후, 비경에서 추가되는 인구를 분에 산입하여 계산
- 향후 Eurostat TF 추진사항 모니터링과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지속적으로 검토예정

### 응답부담 측정모형(Standard Cost Model)의 적용방안 검토

- 관련링크 정보를 이용하여 우리청 조사별 응답부담 측정 가능성 검토
  - \* 관련자료를 조사관리국, 통계개발원 등에 공유 검토할 계획

### EU 품질진단 checklist 공유 및 우리청의 활용 검토

### Ⅲ. 주제별 회의내용

#### □ (1일차) 행정부담 경감

- Eurostat의 비전
  - 유럽통계 연혁
  - 유럽통계 시스템 등
- Eurostat의 행정부담 경감
  - 행정부담 경감 측정 방법 및 사례
-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 추진배경
  - 모델 구성요소 및 산식
  - 관련 자료원

#### □ (2일차) 고용통계 관련

- Eurostat의 노동통계 현황
  - 비임금, 임금분야 통계
  - EU LFS 개요 및 연혁
- 유럽통계 시스템(ESS)의 harmonization과 개념
  - ESS 구조
  - 접근개념 및 주요성과
- Web 기반 자료수집 체계의 harmonization
  - 추진사항
  - 유지 및 한계점
  - Web 기반 자료수집 검토 및 향후 계획
- 노동비용조사 및 노사분류 통계
- 고용보조지표

## 1일차 행정부담 경감 관련

### □ Eurostat의 비전

#### ○ 유럽통계 (European Statistics)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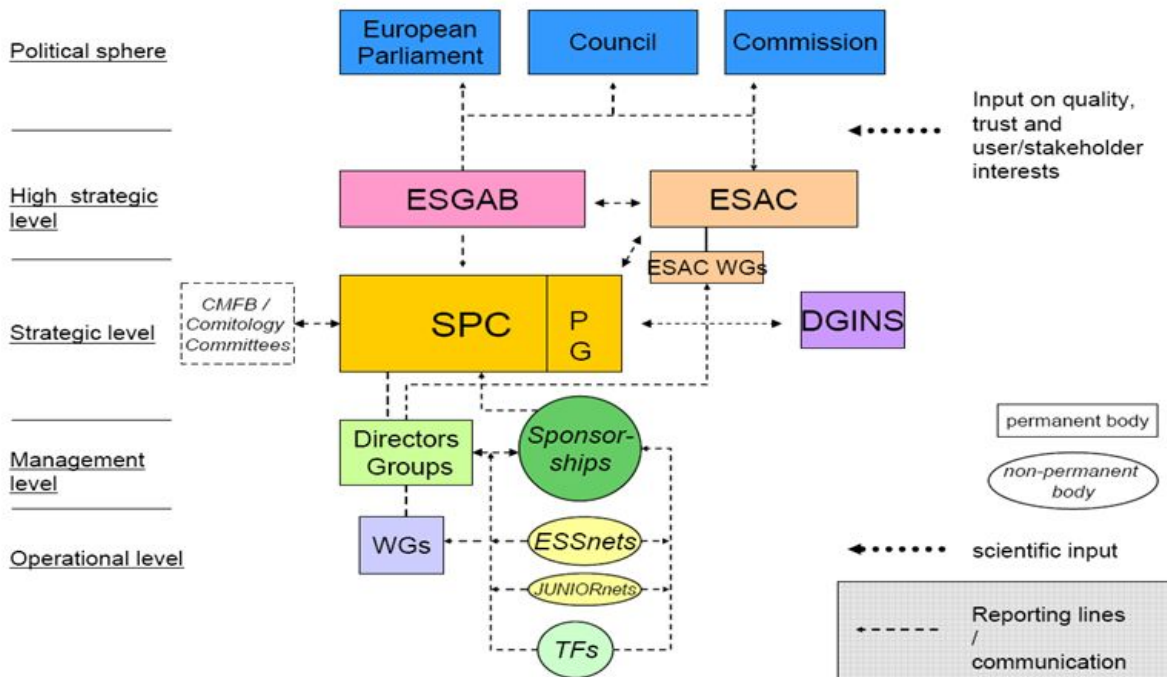
- 1950년대초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방법 조정은 유럽 통계의 토대가 됨
-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대한 로마협정은 유럽통계법규의 탄생으로 기록되고 통계에 대한 토대는 213조 (뒤이은 284조)의 gentlemen's agreement에 기초
- 1990년대 이후 유럽정책은 통계에 직접 기초
- 각 국 통계청은 Eurostat이 유럽 전체 통계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통일된 자료를 수집하고 생산
  - 이런 방식은 계속 향상되어 각 국 차원에 유럽차원을 추가

#### ○ 유럽통계시스템(European Statistical System, ESS)

- 유럽 통계에 관한 2009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와 위원회규정(EC) No 223/2009에 근거
- 유럽통계시스템의 협력강화
  - 비용효율성 원칙(2조)
  - 유럽통계시스템위원회(7조)
  - 협력네트워크(15조) 그리고
  - 통계에 대한 유럽접근방법(16조)
- 개괄적으로 유럽의 공식통계 후속절차가 시작되었고 그 속에는 보충성 원리 존중을 실현하는 한편 협력과 표준화를 가능한 활용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

- 유럽통계시스템 조직
  - ESS 위원회(ESSC)
  - 유럽통계자문위원회(ESAC)
  - 유럽통계관리자문이사회(ESGAB)
  - 파트너십 그룹
  - 국장(Directors) 그룹
  - 위원회제도 및 자문위원회
  - ESSnets
  - 후원회
  - DGINS와 기타 회의

- 유럽통계시스템(ESS)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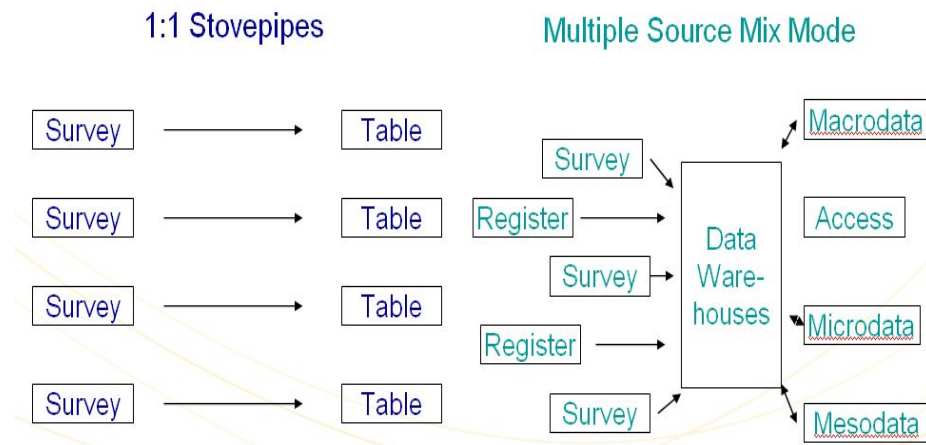
- 통계청 상황
  - 비용경감과 효율성 증가 필요
  - 통계산출물과 응답부담 경감 요구 증가
  - 품질향상 필요
  - 수요자 요구 부상
  - 정보기술(IT)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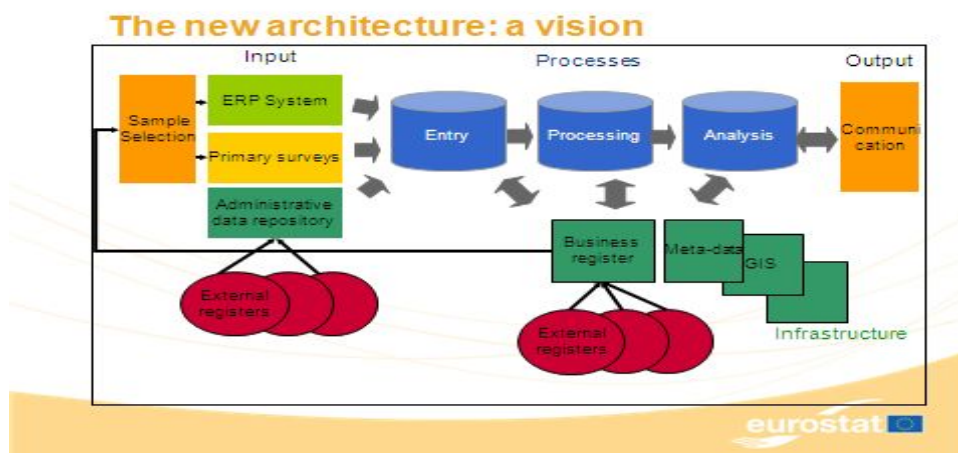
- 문제해결 출발점은 효율성 확보

- 과정의 표준화(CVD 접근법)
- 보유자료의 재활용(행정자료, 기업계정과 전자정부의 기타 도구에 온라인 연계)
- 공동의 기반(등록부, 메타자료, 지리·공간정보)
- 메타자료 중심 아키텍처
- 협력 네트워크, 공동의 도구와 지식 공유
- 공유웹 산출물의 분권형 집중형

- 통계생산의 재설계(리엔지니어링)



- 새 아키텍처 : 비전(vision)



- 유럽 통계시스템 방법
  - 유럽의 통계통합 모델
    - i) 각 국 통계청과 Eurostat 차원에서 통계부문간 횡적 통합
    - ii) 국가와 유럽연합 차원을 포괄하는 종적 통합
  - 업무의 불필요한 변이성과 중복 제거로 효율성 증진
  - 향후 정보 수요에 대한 자율성(free capacities) 신설
- 전문 이론들의 변화
  - 자료 수집가에서 자료의 재활용가로 변화
  - 위험요인
    - i) 개념과 정의가 자료의 보유기관에 의하여 변화
    - ii) 자료 수집의 중단 또는 수정 가능
    - iii) 통제의 상실
    - iv) 고도의 복잡성
  - 필요한 통계에서 연구와 개발의 재 배분
- 기술적, 방법론적 과제
  - 이전에 분리되어 있던 생산과정의 표준화와 통합은 상당한 노력과 효과적인 변화 관리를 요구
  - 단계적 접근과 집약적인 협력을 수반
  - 통계의 품질평가와 신뢰는 훨씬 더 복잡해 질 것
  - 통계에 관한 정당한 관심 예를 들어 재활용되는 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규제기관 기타)와 비교한 입장 재고 및 강화
- 사용자와 의사소통의 새로운 방법
  - 통계생산이 복잡한 방법론에 기초하면 할수록 그 결과 설명 필요
  - 통계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통계정보의 품질에 대한 인식은 밀접하게 관련
  - “공식적”인 것은 사용자가 사전 정의한 품질지침을 평가하는 품질 항목이 되어야 함

- 단순한 통계 요소에 대한 기초 교육은 일반 대중의 오해 경향(수에 대한 무지)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이용자주의는 의사소통의 지침이 되어야 함

## □ Eurostat의 행정부담 경감

### ○ 행정부담경감 측정

- 행정부담경감관련 정책 효율성을 감시하는 여러 가지 기존도구
-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이 가장 널리 사용
- 많은 유럽국가가 사용하나 유일한 것은 아님
- OECD가 불필요한 행정규제 점수위원회에 적용
- 표준비용모델을 더 알기 위해서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administrative-burdens.com/default.asp?page=140>

### ○ 유럽 표준비용모델 정책관련

- 위원회가 2006년 이후 적용
- 규정에 의한 기업과 혹은 공공기관에 부과된 행정부담과 부담을 예측하기 위한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일관성 있는 방법
- 핵심 공식 :  $AC = \sum P \times Q$  ( $P = \text{요금} \times \text{시간}$ )(때에 따라 장비 비용의 아웃소싱을 포함)(양에 대한  $Q = \text{기업체 수} \times \text{연간 횟수}$ )
- 유럽연합에서 행정부담경감에 대한 실행안의 틀로 사용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better-regulation/administrative-burdens/action-programme/index\\_en.htm#h2-the-eu-standard-cost-model](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better-regulation/administrative-burdens/action-programme/index_en.htm#h2-the-eu-standard-cost-model)

### ○ 유럽통계시스템의 응답부담 측정

- 개별 국가 차원에서 많은 개별적 시도가 있었음
- 통계프로그램 2008-2012의 요구에 따라 조직된 측정
- 주요 목적은 약 50회에 이르는 자료 수집과 관련된 기초적인 유럽연합의 법 규정과 관련된 응답부담과 생산 비용 차원에 대한 평가

- 응답부담과 생산비용에 관한 실험(2008)
- 기업체 통계에 대한 응답부담 측정 시도(2009)
- 모든 유럽연합의 법규정에 대한 응답부담과 생산비에 대한 품질 평가(2010)

#### ○ 유럽연합 통계시스템 차원의 응답부담 측정 관련 주요 도전

- 비록 과거 수년에 걸쳐 표준비용모델의 증가한 이용이 관찰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 존재
- 유럽연합 관련 응답비용과 각국 부담의 비교
- 자료 확보 가능성

#### □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 ○ 행정부담에 관심을 갖는 이유

- 규율은 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사회를 보호하고 경쟁을 가능하게 하나, 정부가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균형이 있고, 각국의 기업에 비용이 클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방해
- 정부는 그 기업에 가능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음
-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기업에 대한 행정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는 달성했지만 행정부담이 여전히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기업환경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필요

##### ○ 행정부담경감 방법 : 네트워크에 가입

- 2003년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행정부담 경감 모임에 가입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결성
- 이로 인해 국가간 지속적인 비교가 가능케 하고 지원 네트워크로 역할을 수행

\* 현재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체코, 이탈리아 및 에스토니아로 구성

- 네트워크는 표준비용모델(SCM)을 그 공통의 행정부담경감 측정방법으로 채택하였고, OECD도한 2005년 행정규제의 스코어보드(Scoreboard)에 이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할 것을 결정

<행정부담경감을 위한 국제 표준비용모델 네트워크>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는 운영 그룹의 회원으로 초청. 이 그룹은 지역내 발전을 토의하고 어떤 조치를 향후 취할 지에 합의하기 위해 일 년에 2~4회 모임

운영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창설. 사무국은 운영반 회의, 안전 진척 활동과 자금 모금을 담당. 또한 지식센터의 일상적인 지도력 행사.

표준비용모델 지식센터는 표준비용모델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 다양한 산하 조직이 기업의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경감하기 위해 관련 특정 주제를 취급하기 위해 결성. 현재 4개 모임을 결성.

1. 표준비용모델 지침서반
2. 지원센터반
3. 행정부담과정반
4. 두뇌집단

○ 표준비용모델 채택 사유

-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하려고 할때 이상적. 더욱이 이 모델은 각 국내의 행정부담의 체계적인 분석을 가능
- 방법적 도구로써 표준비용모델은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 경감의 체계적인 실행이 가능하게 하며 수단은 다음과 같음
  - 정책입안자간에 인식 형성
  - 잘 정의된 목표의 경감전략에 착수
  - 많은 당국자로부터의 존중과 승인을 확보

- 행정부담 추이를 감시
- 통일성, 투명성, 신뢰성 및 비교성을 조성
- 비용과 편익이 더욱 세심하게 조화된 규율을 만들기 위해 법규 초안의 행정효과를 사전에 모의시험

○ 간소화 도구로서의 표준비용모델

- 결과의 실천 지향적인 성격으로 인해 표준비용모델 측정의 사후 단계는 간소화
- 모델은 간소화 기회에 대한 중요한 기초와 아이디어 출처를 제공  
간소화 과정에서 이 모델의 채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이 방법을 사용으로 기업이 따르기에 특히 부담이 되는 법규의 특정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가능
  - 기업활동 과정에서 행정비용 발생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 간소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
  - 수집된 자료가 어떻게 정보의무에 대한 수정이 행정비용에 영향 여부 분석에 사용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결과조사를 위해 규정의 변화를 모의 실험가는 것이 가능
  - 모델은 어떤 국과 부처가 부담스런 규정에 대한 책임여부 파악을 지원
  - 더욱이 이 방법의 질적 결과가 매우 관련성이 높음. 그 결과는 어떤 부담이 기업에 대한 가장 큰 irrigation요인 제공여부 파악을 지원 가능

네덜란드에서 이 접근방법은 2007년 41억 유로(25%)의 행정부담 경감에 이르는 절감 계획으로 발전. 덴마크의 첫 결과는 모델을 가지고 측정한 선택지역내 유사한 비율의 잠재 부담경감을 표시

- 이 모델은 또한 벤치마크 연구를 포함하는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이 벤치마크는 각 국에 자체의 부담경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

공할 뿐 아니라 국제 법규 특히 유럽연합 규정의 영향을 강조하는 도구 또한 제공

○ 사후, 사전 또는 사전·후

- 표준비용모델 접근방법은 기존의 규율(사후 측정)의 몇몇 특정 분야 집중측정 혹은 새로운 법규 제안(사전 측정)의 행정결과를 측정하는 영향평가절차 일환으로 두 가지 모두 가능
- 행정부담의 전체적 크기 측정(기존의 모든 법규 측정)도 가능

○ 표준비용모델의 작동 방식

- 표준비용모델은 법규를 측정할 수 있는 취급 가능한 요소로 세분화 즉, 정보의무<sup>1</sup>(information obligations), 자료 요구<sup>2</sup>(data-requirements) 및 활동<sup>3</sup>(activities)임.
- 정보의무(information obligations) : 공공부문이나 제 삼자에게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법규에서 비롯되는 의무
  - 이 의무는 반드시 정보가 공공기관이나 혹은 개인에게 이전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감사에 사용되거나 혹은 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정보를 가질 의무를 포함
  - 규정은 많은 정보의무 포함 가능
- 자료 요구(data-requirements) : 각 정보의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료요구로 구성되며, 자료 요구는 정보의무 이행에 제공되어야 할 각 정보요소
- 활동(activities) : 각각의 자료요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특정 행정활동 수행(예시 : 정보기록, 정보 송신, 정보 추출 등)
  - 활동은 내부적으로 수행되거나 외주(outsourced) 가능
  - 표준비용모델은 여러 가지 비용요소를 토대로 각 활동을 완료하는 비용을 추정

- 가격 : 가격은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행정활동에 대한 비용이나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간당 비용을 포함하는 세금, 봉급 비용으로 구성
- 시간 : 행정활동을 완료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
- 수량 : 영향을 받는 기업체 수와 그 활동의 매년 완료예정 빈도로 구성

상기 요소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 표준비용모델 공식도출

$$\begin{aligned} \text{활동비용(Activity Cost)} &= \text{가격(Price)} \times \text{수량(Quantity)} \\ &= (\text{세금} \times \text{시간}) \times (\text{기업수} \times \text{빈도}) \end{aligned}$$

#### ○ 관련 정보 입수방법

- 행정부담은 법규의 대상 집단내 소수의 기업과의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측정
- 주어진 정보 의무(information obligation)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각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과 비용 구체화 필요
- 하나의 법규가 여러 형태의 기업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기업의 관련 세분화가 이루어지며, 예를 들어 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과 관련
- 면접중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후속 각각의 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시간과 비용 표준화 수행
- 표준화는 법에 의한 정보의무를 따를 때 각 세부 개체내 일반적 효율을 갖는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비용을 제시
- 일반 효율을 갖는 기업은 대상 집단 내에 있는 회사로 그 행정 업무를 보통의 방법으로 처리하며 달리 말하면 사업체는 그 업무를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잘하거나 못하지 않게 처리



## 2일차 고용통계 관련

### ☐ Labour market statistics in Eurostat

#### ○ 통계 현황

##### - 비임금분야 (5종)

Labour Force Survey, Monthly Unemployment, Job Vacancies, Labour Market Policy Statistics, Labour Disputes

##### - 임금분야 (6종)

Structure of Earning Survey, Labour Cost Survey, Annual Earnings and Labour costs, Gender pay gap, Minimum Wages, labour Cost Index

#### ○ Europe 2020

- 고용통계는 경제활동참가, 노동시장정책,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교육훈련, 평생교육, 노동비용 등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또한, 국민계정과 기업 및 산업분야로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바, 고용통계의 조사단위 조정이 요구됨

#### ○ EU LFS

- EU LFS는 분기별로 작성되며, 회원국에 제공되는 월, 분기,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즉, 단일 통계가 아닌 33개 국가별로 작성된 통계에 기반
- European Statistical System은 회원국간 협력과 작성통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각종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 LFS도 국가별 상이한 기준과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EU 정책목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harmonize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추진중임
  - Eurostat는 항목, 조사주기, 대상기간, 조사대상 등에 대한 조정중
    - \*근거 : Framework regulation, Implementing regulations

- EU LFS의 주요연혁

- (1960) 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Eurostat에 의해 작성
- (1968~1971) 연간단위로 작성
- (1973~1981) 반기단위로 작성
- (1983~1991) 회원국간 비교성 확보를 위해 개념 등 변경하여 연단위로 작성
  - \*13차 국제노동회의 권고안에 따른 개념적용
- (1992~1997) 국가 및 지역별 수준 자료의 정도와 품질향상을 위해 조사관련 자체 권고안과 기준 등을 작성제공
- (1995) 15개 회원국으로 LFS 작성범위 확대
- (1998~2000) 신규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과거 계열 수정
- (2000) 27개 회원국으로 LFS 작성범위 확대
- (2002) 분기별 작성 및 보고 권고
- (2006) 조사항목을 목록 및 분기별 조사대상기간을 52주로 변경
  - \*분기→52주로 개념 명료화, 표본규모(1.8백만명), 추출률(0.2~3.3%)

- EU LFS의 자료수집방법 및 표본설계

- 응답자 면접방식으로 자료수집
- 대리응답의 경우, 가구내 응답가능한 사람으로 허용
- 1차 wave (면접방문조사) 2차 wave(전화조사) 등으로 추진
- 일부 국가는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를 갖고 있는 등록 자료 등을 이용 가능
- 표본은 확률표본으로 하나, 층화추출, 연동패턴 등은 harmonize 되어 있지 않음

## □ Role of the ESS\* in the harmonization and adoption of concepts

\*European Statistical System

### ○ ESS 구조

- European level은 Eurostat에서 National level은 국가별 통계작성 기관(NSI)에서 담당
- International level은 UN, OECD, IMF, WB 등 국제기구와 협조

### ○ Harmonization & adoption 접근개념

- ESS는 국가별 작성통계의 개념과 결과에 대한 일치성 확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음
- 국가별로 구속력이 있는 법적근거 측면(Legal basis)과 지침서, 권고안 등과 같은 협의사항 측면(Gentlemen's agreement)으로 접근 harmonize 유도
- 기법측면은 TF, 워크숍, ESS-net으로 협의를 추진
  - \*Labour Market Statistics(LAMAS) Working Group, Directors of Social Statistics, ESS Committee

### ○ 주요성과(예시)

#### <Labour Market Statistics Area>

Legal basis	Gentlemen's agre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bour Force Survey(분기)</li> <li>- Structure of Earning Survey(매 4년)</li> <li>- Labour Cost Survey(매 4년)</li> <li>- Labour Cost Index(분기)</li> <li>- Job Vacancy Statistics(분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nthly Unemployment(매월)</li> <li>- Annual earnings and labour cost(매년)</li> <li>- Gender Pay gap(매년)</li> <li>- Minimum wages(연 2회)</li> <li>- Labour Market Policy data base(매년)</li> <li>- Labour disputes(매년)</li> </ul>

- 국제협력 측면은 국제비교성 확보를 위해, ESS에서 국제기준을 수용하여 정의 등 표준화 추진
  - (ILO) 실업자 정의, Labour disputes는 joint collection으로, 국제직업분류(ISCO-08), 근로시간 등 권고안 수용 등

## □ Issues of input harmonization with special focus on web data collection

### ○ LFS in Europe의 개요

- 가구단위 조사로 EU 목표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EU 정책효과 분석 및 평가, 사회·경제 구조분석 등을 위해 작성
- 대규모 표본을 이용하며, 일부 국가는 동 국가내에서 표본규모가 제일 큰 조사인 경우도 있음
- 조사항목은 100여개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교육, 지역, 여행, 국민계정, 이민자료 등 다른 자료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 EU-LFS는 단일 통계가 아님
  - 33개 국가의 개념과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EU 전체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결과비교성 확보 등을 위해 harmonize 추진중
  - EU 통계가 단일 통계가 아닌 이유는
    - ①대부분 국가의 오랜 관행으로 '50년대 이후 지속('73년 European 규정 처음 작성)
    - ②국가별 상이한 작성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단일통계 작성시 당해 국가의 특성치가 없어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
    - ③행정자료 활용 가능과 국가별 노동법 및 고용관행 등의 차이에 기인

### ○ 추진사항

#### <Output 측면>

- 공통 특성항목
- 정의(ILO 개념), 분류(NACE, ISCO, ISCED, NUTS)의 일치성 확보
- 조사항목과 항목별 세부 지침 등
- data set의 표준화

## <Input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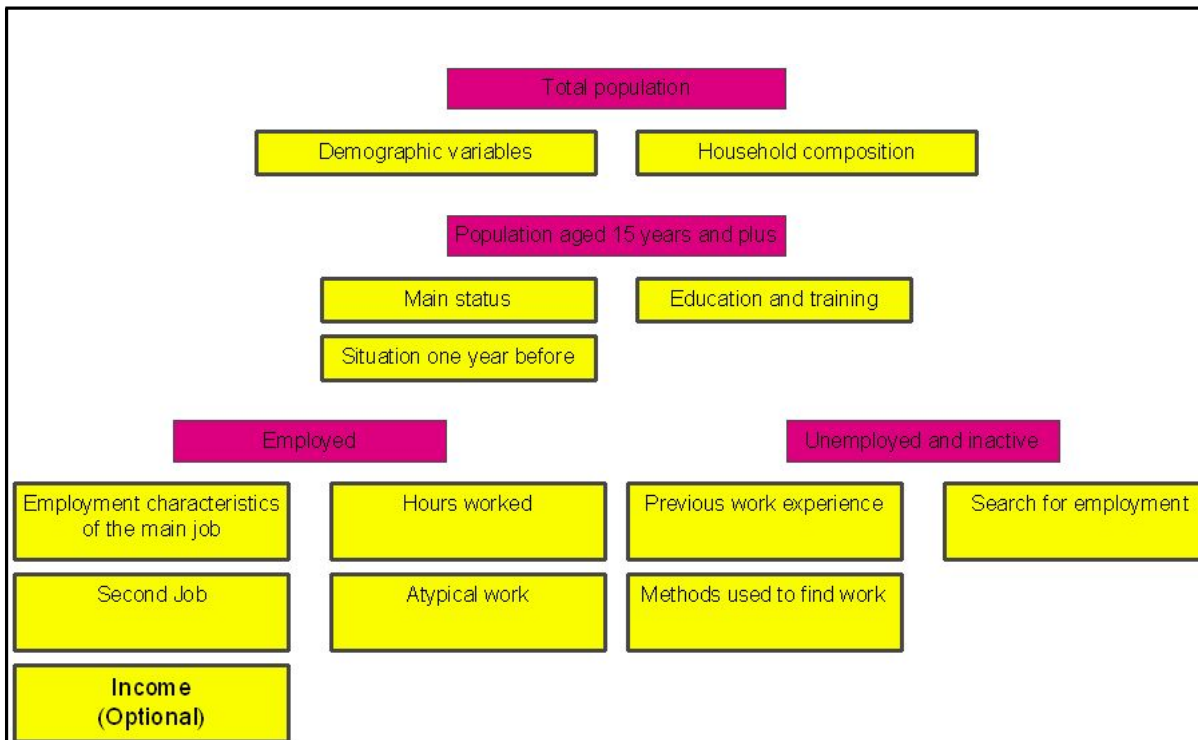
- 작성주기 (주기성 확보 : 월, 분기, 년 등)
- 조사대상기간 : ILO는 일정기간을 반복적으로 정하여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조사대상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비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
- 조사단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의 표준화로 비표본오차 축소
- 경제활동상태 파악을 위한 조사항목 및 유형 등 표준화

## ○ 추진해야 할 표준화 사항

- 조사표 표준화
- 조사설계의 표준화
  - 모집단 틀, sample stage, primary key, 추출률, 층화변수, 연동 구조, 항목 및 가구 무응답 처리 등
- 조사방법
  - Survey mode (CAPI, CATI, Postal, Face-to-Face, 혼합형)
  - 조사원 수, 조사원 선발 및 교육훈련, 수당지급
  - 방문 및 면접시간 등

## ○ Harmonize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Legal basis, Gentlement agreements를 근거로 추진
- 주기적인 조사표 검토
- Eurostat에서 자료관리 집중화
- 품질진단
  - 분기별 정도 보고 및 매년 품질보고서 작성
  - 3년 주기로 유럽위원회에서 EU parliament and Councilfp 보고
  - 품질 TF, 우수 선행사례와 경험 공유 등



## Main aspects covered in Reg. 577/98

2. The sequence of the questions on employment consists of at least two separate questions: one question on currently working and another question on having a job when being temporarily absent from work (persons on leave). The question on being at work must precede the question on having a job so that the contrast between both questions contributes to a complete identification of the temporarily absent.
5. The questions on employment must clearly indicate that only work for pay or profit is considered as an economic activity within the ILO framework.

**Example from Reg. 1897/2000: 2 of the 12 principles on labour status**

### FTPT – Col 50

**Periodicity**  
QUARTERLY

**Short description**  
Full-time/Part-time distinction

**Codes**  
1 Full-time job  
2 Part-time job  
9 WSTATOR ≠ 1, 2  
Blank No answer

**Filter**  
WSTATOR = 1, 2 (People in employment)

**Purpose**  
To study the flexibility of work arrangements, to track the evolution of this form of employment, and to calculate an underemployment indicator.  
This variable could be used to monitor the promotion of flexibility combined with employment security.

**Definition**  
> A **part-time worker** is "an employed person whose normal hours of work are less than those of comparable full-time worker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1<sup>st</sup> session, 1994).

**Implementation rules**  
> The "comparable full-time workers" in the definition above should be people who work in the same occupation in the same local unit. If the respondent is the sole person working in his/her occupation, then the benchmark is the group of people working in the same occupation in his/her branch of industry.  
> Only the main job is considered.  
> The distinction between full-time and part-time work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a **spontaneous answer** given by the respondent.

**Gentlemen's agreement: explanatory notes**

## ○ Harmonize에 따른 한계점

- 기준변화에 따른 비교 문제
  - 일부 국가의 조사대상 상한 연령(75세 미만)과 최저연령(16세 이상) 등을 변경시 기존 시계열 단절에 따른 문제
  - 조사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시간소요 및 법적근거 마련 등
  - 기준 변경에 따른 국가별 노동력조사의 시계열 문제
  - 국가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된 조사의 특성 저하 등

## ○ Web 기반의 자료수집 검토

### (장점)

- 저비용 조사
  - 조사원 미 채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 자료수집 과정의 관리의 체계 일관성과 자동화 확보 가능
- 응답자 친화적 조사
  - 응답자가 편리한 시간에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음
  - 조사원 방문의 불필요성
  - 응답자 비밀보호와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가능

### (단점)

- 조사결과의 정도문제
  - 조사원을 통한 응답자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없어 정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Web을 통한 조사만 추진할 경우, 응답내용의 심각한 편향발생 우려
  - 조사모드에 따른 편향 비교 불가능으로 전반적인 자료 정도에 대한 제고 필요

## (추가검토)

- 노동력조사의 Web 기반 자료수집 방법은 실현가능하나, 추후 면밀한 추가 검토\*노력 요구

\*IT환경, 응답자 접근 전략, 조사표설계, ISCO, NACE 등 분류코딩에 대한 검토

## (Eurostat plan)

- 회원국간 협조 및 독려 유도
- 추가 연구활동을 위한 재원마련 및 지원
- Web 기반을 이용한 사전조사(pilot survey) 진행
  - 대규모 및 고비용 조사에서 저비용 조사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 다양한 조사모드와 호환성 확보 가능성 검토 등

## □ Labour Cost Statistics

### ○ 노동비용 조사개요

- 매 4년 주기로 노동비용 조사 실시하며, 근거는 다음과 같음(LCS)
  - Framework : Council Regulation 530/1999
  - 항목 및 자료관리 : Commission Regulation 1373/1005
  - 품질평가 및 보고 : Commission Regulation 698/2006
- 매년 노동비용 자료수집 및 보고 합의(Gentlemen's agreement)
- 분기별 노동비용 지수 작성(L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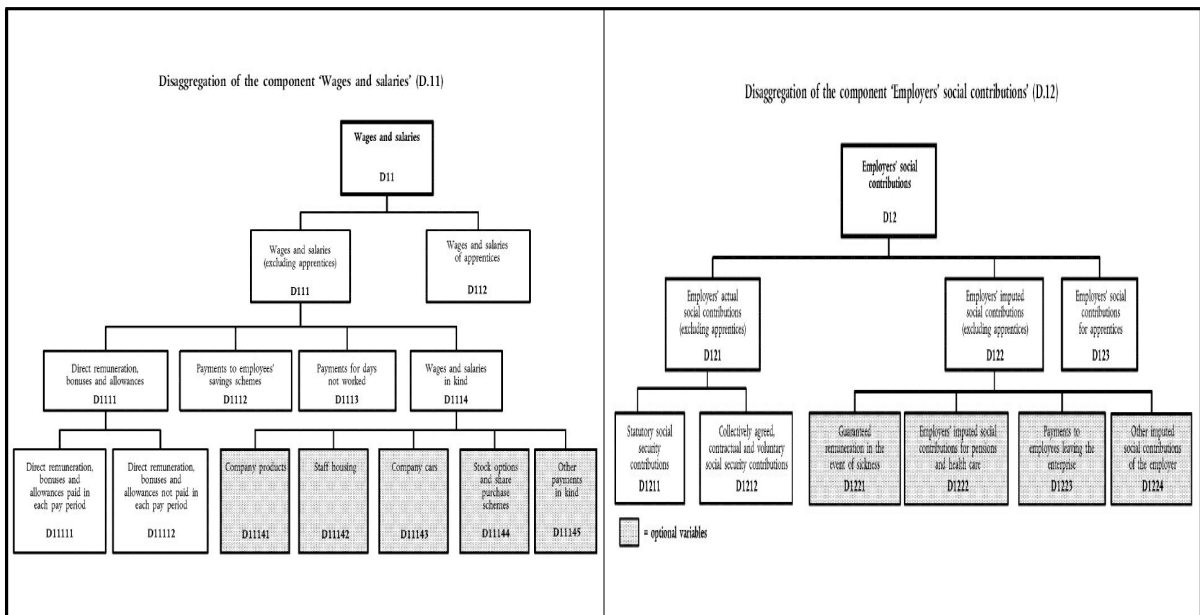
### ○ 조사별 내용

#### (노동비용조사, 매 4년주기)

- EU-level 통계는 1996년 이후부터 작성



- 주요 구성항목
  - gross wages and salaries in cash and in kind D11
  - employer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D12
  - vocational training costs D2
  - other expenditures, (such as recruitment costs) D3
  - taxes (employment taxes) D4
  - employment related subsidies received D5
- Labour costs (D)=D1+D2+D3+D4-D5
- 구성항목간 불일치 발생
  - 종사자수(A1) 근로시간(B1) 급여(C1)
  - 경제활동, 기업규모, 지역 등 세분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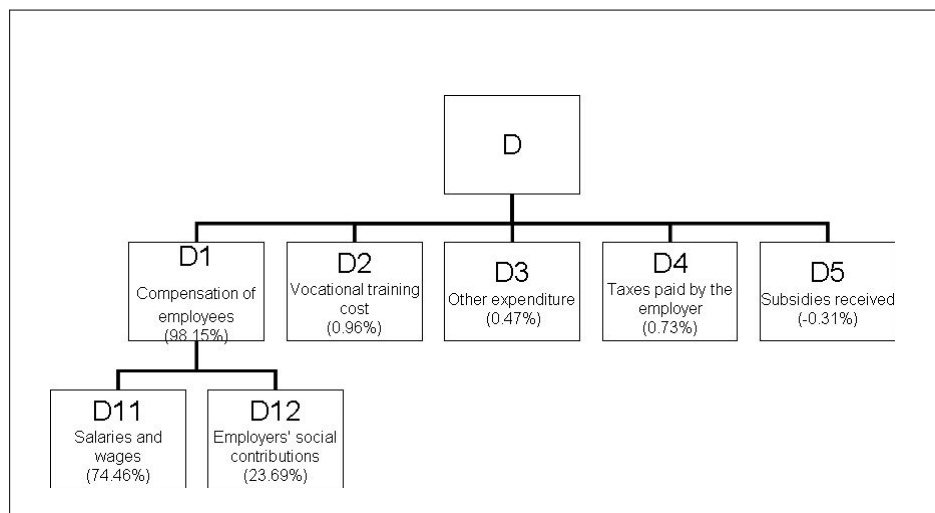


- 응답부담 경감 추진
  - 조사자료 이외의 기타 행정자료원 발굴
  - 기업내 종사자수 10인이상 규모로 상향
  - 조사항목중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것과 선택항목으로 구분

## (노동비용통계, 매 1년 주기)

- Gentlemen's agreement에 근거하여 추진
- 자료원
  - Hourly and Monthly Labour Cost(LC)
  - 총 노동비용의 구조(D)
  - 산업별로 수집하며, 10인이상 기업과 1인이상 기업으로 구분
  - 산업은 NACE Rev2 section B~S과 NACE 준수

<노동비용의 체계도>



## □ 노사분규 통계

### ○ 개요

- 자료원 : Trade union, Social security officers, Employers Confederations, Employment Offices
- 방법 및 정의 : ILO Resolution(1993)
- 주요항목
  - 노동쟁위 및 직장폐쇄 건수
  - 노동쟁위 일수(1000명당)
  - 참가인원 수(1000명당) 등
- 조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
- 주기 : 매년

### ○ ILO, Eurostat 결합자료 작성 추진

- 1~2월 : Eurostat, ILO 공동으로 실행방법과 개선에 합의
- 3~4월 : ILO에 관련자료 제공
- 6~7월 : ILO 검토결과 회신
- ~현재 : 불일치 사항 등에 대한 추진사항 검토중
- 결합자료 작성에 따른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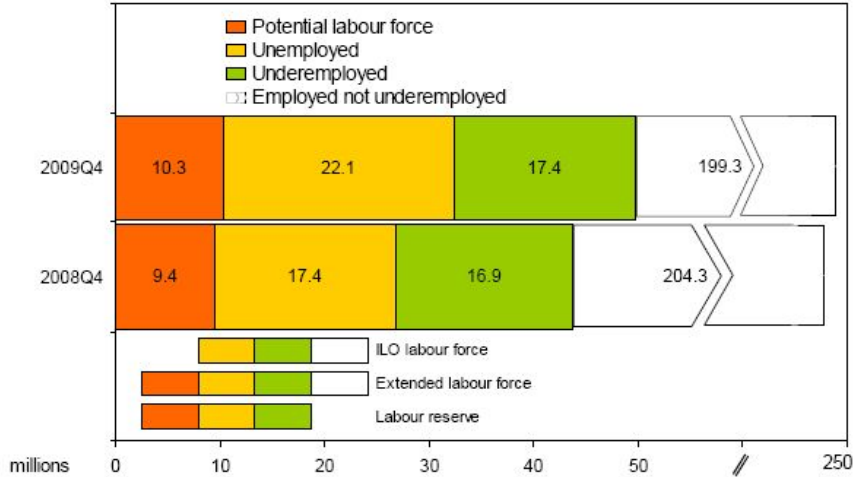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의 부담 경감</li> <li>-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자료 수집의 연속성 확보 가능</li> <li>- ILO, Eurostat 발표자료의 일치성 확보</li> <li>- 이용자는 두 기관에서 동일한 세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 다양화</li> <li>- 자료의 통합 관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변경 등에 따른 대처 유연성 저하</li> <li>- 응답자와의 친밀도 저하</li> <li>- 자료수집 체계단절(기존 ILO, Eurostat 에서 구축한 수집체계)</li> </ul>

## □ 고용보조지표

- Eurostat는 실업률 이외의 EU 차원의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09.2월부터 '10년까지 **TF**를 구성하여 4차례에 걸쳐 개념과 포괄 범위 등에 대한 논의 진행
  - EU 국가도 포괄범위와 공표여부 등은 민감한 사안으로 **TF**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음
- 실업률을 보완하기 위한 구성 지표내용
  - 불완전 취업자(Underemployed)
    - **파트타임** 불완전 취업자 : 파트타임 취업자이면서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바라고 일이 가능한 사람
    - **풀타임** 불완전 취업자 : 풀타임 취업자이면서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바라고 일이 가능한 사람
  - 잠재 노동력(Potential labor force)
    - 취업가능성 없는 잠재노동력  
(다음요건중 하나를 만족하는 비경제활동 인구)
      - i) 지난 4주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향후 2주내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 ii) 3개월 안에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구하였으나, 다음 2주 내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 iii) 3개월 이후에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구한 사람
    - 구직활동 않는 잠재 노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을 원하고 일이 가능하지만 능동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는 않은 사람 + 일이 가능하지만 수동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 + 일이 가능하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구직 방법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

○ 구성지표별 EU국가의 확장 노동력 계산

Extended labour force and its components, EU27, non-seasonally adjusted (million people)



Unemployment and labour reserve indicators, EU27, non-seasonally adjusted, (%)

	2009Q4	2008Q4
Unemployment rate	9.3	7.3
Labour reserve as a share of the extended labour force	20.0	17.6
Underemployed as a share of the labour reserve	35.0	38.7
Unemployed as a share of the labour reserve	44.4	39.8
Potential labour force as a share of the labour reserve	20.6	21.5

○ 추가 검토사항

- Full-time vs Part-time underemployed 에 대한 논의
- 비경인구중 “일을 원하는 사람중 현재 즉시 취업이 곤란한 사람”과 “즉시 취업은 가능하나 현재 일을 찾지 않는 사람”의 포함 여부
- Unused labour supply의 처리 문제
- 고용보조지표의 명칭
- 고용보조지표를 산출시 분모 처리 문제
  - 미국, 캐나다 등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정한 후, 비경에서 추가되는 인구를 분에 산입하여 계산하고 있음
- 동 사항은 TF 추진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 예정

## IV. 향후 과제 및 시사점

### 고용보조지표

- Eurostat는 실업률 이외의 EU 차원의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09.2월부터 '10년까지 TF를 구성하여 4차례에 걸쳐 개념과 포괄 범위 등에 대한 논의 진행
  - EU 국가도 포괄범위와 공표여부 등은 민감한 사안으로 TF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음
- 추가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TF 추진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 예정
  - Full-time vs Part-time underemployed 개념
  - 비경인구중 “일을 원하는 사람중 현재 즉시 취업이 곤란한 사람”과 “즉시 취업은 가능하나 현재 일을 찾지 않는 사람”의 포함 여부
  - Unused labour supply의 처리 문제
  - 고용보조지표의 명칭
  - 고용보조지표를 산출시 분모 처리 문제
    - 미국, 캐나다 등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정한 후, 비경에서 추가되는 인구를 분에 산입하여 계산
- 향후 Eurostat TF 추진사항 모니터링과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지속적으로 검토예정

### 응답부담 측정모형(Standard Cost Model)의 적용방안 검토

- 관련링크 정보를 이용하여 우리청 조사별 응답부담 측정 가능성 검토
  - \* 관련자료를 조사관리국, 통계개발원 등에 공유 검토할 계획

### EU 품질진단 checklist 공유 및 우리청의 활용 검토

## <참고> 주요 링크

### **Eurostat home:**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 **Eurostat public database:**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statistics/search\\_database](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statistics/search_database)

### **Eurostat publications:**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publications/recently\\_published](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publications/recently_published)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labour\\_market/publications](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labour_market/publications)

표준비용모델 방법과 간소화

[http://www.administrative\\_burdens.com](http://www.administrative_burdens.com)

## V. 불임자료

- Eurostat Vision
- 5th Meeting of the European Statistical System Committee
- Seminar in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Mexico)
- Labour market statistics in Eurostat
- Seminar on Labour Market Statistics(Mexico)
- Issues of input harmonization with special focus on wev data collection
- The Statistical Use of Administrative Data in Korea(Kostat)
-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Kostat)